

4. 租稅減免規制法中 改正法律

法律 第4,521號 1992. 12. 8

조세감면규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3항중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 8”을 “제40조의2 내지 제40조의9”로 하고,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한다.

제15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2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에 다음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분	제조업소득금액	감 면 율
거 주 자	5천만원이하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5천만원초과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내국법인	1억원이하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40
	1억원초과분	산출세액의 100분의 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산출세액의 계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4항(중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부터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년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주준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년도의 종료일 이후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④ 제2항 제2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는 제13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제1항중 “100분의 10(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에 지출한 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100분의 5(중소기업이 지출한 금액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훈련비 및 중소기업 기술지도비에 지출한 금

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10)”로 하고, 동조 제2항중 “100분의 10”을 “100분의 25”로 한다.

제18조 제1항 제2호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100분의 50”을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용역사업과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으로 한다.

제40조의9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9(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 ① 제주도개발특별법 제3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위할 수 있는 사업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년도와 그 다음 과세년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년도에 있어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1. 농·임·축·수산물외의 제조 또는 가공업

2. 전통민속주의 제조업

3. 관광토산품의 제조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1조 의 제1항중 “100분의 10을 곱하여”
를 “100분의 15를 곱하여”로 한다.

제43조 제1항중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다음 각호의 방법중 하나
를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로
하고, 동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업용 자산에 대한 투자(중고품에 의
한 투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3(대통령령이 정
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투자를 완
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 사업용 자산에 대하여 일반감가상각
범위액에 불구하고 당해 자산의 취득
가액의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의 100
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
비로 하여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
하는 과세년도의 소득금액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제49조 제2항 제6호중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을 포함한다)”을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

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
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
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으로 하고, 동조 3항에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이 수
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중 그 법인의 고
유의 목적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각 사업
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
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
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3.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
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

제55조 제2항 제1호중 “출자자 또는 사용
인”을 “법인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로 한다.

제60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
3항중 “제4호 및 제6호”를 “제4호·제6
호 및 제7호”로 하며, 동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
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하여 한국토
지개발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주택공사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4.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통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 거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6.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7.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로서 대통령령이 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④ 소관세무서장은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상의 공사완료일까지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되는 경우에는 제40조의6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67조의14 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한국보훈복지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보훈복지공단이 동법 제6조 제1호의 사업수행을 위한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등
- 제71조 제1항중 “제18조 제1항”을 “제42조 제1항”으로 한다.
- 제71조의6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71조의6(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시설(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절약시설”이라 한다)을 취득하는데 소유되는 자금이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과세년도와 그 이후 2년이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년도마다 당해 투자한 과세년도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 ② 제1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금에 산입한 에너지절약시설투자준비금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73조 제4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기연초생산협동조합법·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에 규정된 것.

제73조 제4호의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산림의 보호와 개발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74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전철건설용 물품으로서 국내제국이 곤란한 물품(관세가 경감되는 물품에 한한다)

제74조의3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3조의3(재활용 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제1항 제1호중 “지하철도건설용”을 “도시철도건설용”으로 한다.

제86조 중 “제15조”를 “제15·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7조 제1항중 “제40조의2 또는 제43조의5”를 “제40조의2·제43조의5 또는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조 제6항중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 제1항 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제88조 제2항 제1호중 “제71조의5”를 “제71조의5·제71조의6”으로 하고, 동항 제4호중 “제15조”를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8”을 “제40조의8·제40조의9”로 한다.

제89조 제1항중 “4년”을 “4년(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세액의 경우는 5년)”으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먼저 발생

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를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하되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액과 기타의 세액공제액의 발생년도가 같은 경우에는 기타의 세액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로 한다.

제91조 제1항중 “제15조·제15조의3”으로, “제40조의7·제40조의8”을 “제40조의7 내지 제40조의9”로 한다.

[별표] 공공법인-범위의 제111호중 “제49조 또는 제50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로서”를 “제49조·제50조 또는 제76조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으로서”로 하고, 제115호중 “한국전산원”을 “한국전산원과 한국정보문화센터”로 하며, 제130호 내지 제13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0.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 131.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 132.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교병원
- 133. 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 134. 영화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화진흥공사
- 135. 민족통일연구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족통일연구원

136.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지역난방공사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제2항중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을 “제57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중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안에 있는 토지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4,451호 조세감면규제법중 개정법률 부칙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예) 이 법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예등) ①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으로서 각 과세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기술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신기술기업화사업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에 관한 적용예)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에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기술용역사업등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20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제주개발사업에 대한 조세특례등에 관한 적용예) ① 제40조의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60조 및 제67조의1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증자소득공제에 관한 적용예) 제55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가지급금을 최초로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부가가치세 영세율에 관한 적용예) 제73조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공급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관한 적용예) 제74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최저한세에 관한 적용예) 제88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중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199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기업합리화적립금에 관한 적용예) 제91조 제1항의 개정규정중 제154조의3의 개정규정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종료하는 과세년도 분부터 적용한다.

□ 개정이유 □

우리 경제의 충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의 최근 자금난과 인력난등으로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이 기술개발이나 설비투자를 원활히 하

하여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자생력을 배양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세금을 경감하여 주는 한편,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기술인력개발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1.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앞으로 2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중소기업사업조정법을 위반하여 중소기업고유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15조의3).
2. 기업이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하여 손비를 인정받은 후 실제로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경우 현재는 지출년도에 이를 익금에 환입하여 과세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기술개발비용을 지출하는 연도에 관계없이 동 준비금을 적립한 후 4년거치 3년분할하여 익금에 환입하도록 함으로써 준비금의 지원효과를 높이도록 함(법 제16조).
3. 기업에 특허받은 기술등 신기술을 사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기술설비를 취득하는 경우 현재는 취득연도에 따라 그 취득가액의 100분의 50(외국산 기술설비의 경우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취득가액의 100분의 90(외국산 기술설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가상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자비용이 보다 빨리 회수될 수 있도록 함(법 제18조 제1항 제2호).
4. 대도시내의 공장 또는 수도권내의 법인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이전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비로 인정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공장설비가액 또는 법인본사건물가액의 100분의 15까지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이전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법 제41조 및 제41조의2).

5.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취득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 당해 년도에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가금을 보다 쉽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법 제71조의 6).
6. 재활용이 가능한 폐지·고철등의 폐자원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가계등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폐자원을 매입하여 재생업체에 판매하는 경우 현재는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매입가액중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매입가액으로 간주하여 이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폐자원의 수집이 보다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법 제74조의3).

〈법제처 제공〉

씨앗뿌린 2백만호 열매맺는 내집의꿈